

대구지방법원 2016. 12. 14 선고 2016나302326(본소), 2016나302333(반소) 판결
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 등, 손해배상(기)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16. 12. 14 선고 2016나302326(본소), 2016나302333(반소) 판결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. 1. 27 선고 2015가단8055, 2015가단2613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 문중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B 문중

피고, 피항소인 C

변론 종결 2016. 11. 16

판결선 고 2016. 12. 14

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. 1. 27. 선고 2015가단8055(본소),
2015가단2613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본소 청구취지

가. 상주시 G 답 2,625㎡에 관하여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,1)피고 C 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 . 1L 19. 접수 제 29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2)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 B 문중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. 5.20. 접수 제14823호, 같은 법원 2008 . 5. 20. 접수 제14824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상주시 H 전 613평에 관하여 원고에게, 피고 B 문중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08. 5. 20. 접수제 14823호, 같은 법원 2008. 5. 20. 접수제 14824호로 마친각 등기 명 의 인표시 변 경 등 기 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.

다. 상주시 I 임야 11, 901㎡ 에 관하여 원고에게, 피고 B 문중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 . 5. 6. 접수 제 131기호, 같은 법원 2008 . 5. 19. 접수 제 14601호, 같은법원 2008 . 5. 19. 접수 제 14602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라. 상주시 J 임야 26, 182㎡ (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 . 5. 6. 접수 제 131기호, 같은법원 2008 . 5. 19. 접수 제 1460 1호, 같은 법원 2008 . 5. 19. 접수 제 1460 2호로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.

2. 반소 청구취지

원고는 피고에게 3, 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반 소장부분송달 일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3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원고는 제1심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말소등기 청구 등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손해배상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, 본소가 각하되고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는바,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. 따라서 본 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.

2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 41내지 54호증(가치번호 있는 것은 가치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당심 증인 C E의 증언을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중 1. 기초 사실, 2. 본 소청구에 대한 판단 '부분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. 결론

그 령다면,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조성훈 판사 서동원